

1964년 2월 4일 서울에서 서명  
1967년 1월 15일 발효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어느 일방국의 국민과 회사가 타방국의 영토내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사한 투자에 대한 협정상의 보호가 민간기업의 창의를 고무하고 양국민의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 인정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 (1) 각 체약국은 그 영토내에서 자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가능한 한 여사한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각 경우에 있어서, 체약국은 이들의 투자를 공평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 (2)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는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그 투자의 소유와 관리가 전자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속한다는 이유로서, 자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또는 제3국의 국민과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2조

어느 체약국도 그 영토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그 투자의 경영, 이용 또는 향유를 포함하는 여사한 활동에 대하여도, 자국의 국민과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과 회사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아니한다.

### 제3조

- (1)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 (2)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보상이 없이는 수용되지 아니한다. 여사한 보상은 수용된 투자와 동액이어야 하며, 실제도 환가할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부당한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한다. 여사한 보상을 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수용시 또는 그 전에 적절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여사한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액은 그 영토내에서 투자를 수용한 체약국의 법률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재검토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3)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혁명, 국가비상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투자의 손실을 받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는, 상환, 배상, 또는 기타의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대가에 관하여 그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유사한 지불금의 이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 국민 또는 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하는 대등한 청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4) 상기 제1,2 및 3항의 규정은 투자의 수익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 (5)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본조에 규정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

#### 제4조

어느 일방 체약국도 투자에 관하여,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자본과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이전을 보장하고 또 청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청산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의 이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

- (1)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서 행한 투자에 관하여 인수한 보장에 의하여 자국의 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은 제11조에 의하여 전기 일방체약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 또는 명의를 전기 일방 체약국에게 이전하는 것과 또 전기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전기 일방 체약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명의(양도된 이익)에 대한 전기 체약국의 대위권을 인정한다. 양도된 이익으로 말미암아 관계 체약국에게 행하여질 지불금의 이전에 관하여, 제3조, 제2,3,4항과 또한 제4조가 준용된다.

#### 제6조

- (1) 관계 당사자가, 투자가 소재하는 영토내의 체약국의 관계기관에 의하여 허용되는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는 한, 제3조, 제2,3,4항과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이전은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이전이 행하여지는 날의 경상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2) 경상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과 합의된 평가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 협정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평가의 상하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
- (3) 이전 일자에 상기 제2항이 규정하는 환율이 관계 체약국 내에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이 미국 “달러”화나 또는 기타 자유로이 교환되는 통화 또는 금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정한 공정 환율이 적용된다. 그와같은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이 투자된 영토내의 관계당국이 공정하고 타당한 환율을 인정한다.

#### 제7조

어느 일방 체약국의 법규 또는 본 조약 이외에 양 체약국간에 현존하거나 또는 차후에 설정될 국제의무가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지위를 결국 부여하는 경우에는, 여사한 지위는 본 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일방 체약국도 자국의 영토 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에 관하여 그 체약국이 부담하는 기타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

- <1>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절대적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 가.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또한,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등 물에 대한 기타 권리
  - 나. 株 또는 其他 種類의 會社利益權
  - 다. 金錢 또는 經濟的 價値가 있는 行爲에 對한 權利證書
  - 라. 著作權, 工業財産權, 技術公證權, 商標權 및 營業權
  - 마. 公法에 依한 事業免許權 資産이 投資되는 方式의 變更은 投資로서의 種別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收益”이라 함은 特定한 期間內에 投資에 依하여 利潤 또는 利益으로서 얻어진 金額을 말한다.
- <3> “國民”이라 함은
- 가. 大韓民國에 關하여는 韓國의 國籍法에 따라서 大韓民國의 國民으로 看做되는 者를 말하며,
  - 나. 獨逸聯邦共和國에 關하여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이 規定하는 獨逸人을 말한다.
- <4> “會社”라 함은
- 가. 大韓民國에 關하여는 責任이 有限인가 아닌가를 不問하고 또한 金錢的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關係없이 大韓民國의 領土內에서 設立되고 大韓民國의 關係法規에 따라서 合法的으로 存立하는 法人 또는 會社 또는 協會를 말한다
  - 나. 獨逸聯邦共和國에 關하여는 法人格의 所有如何를 莫論하고 社員, 協會員 또는 會員의 有限인가 아닌가에 關係없이 獨逸聯邦共和國의 領土內에서 所在하고 그 法律規定에 依據하여 合法的으로 存立하는 法人과 商社 및 其他 會社 또는 協會를 말한다.

## 제9조

본 조약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본 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행한 투자에도 다시 적용된다. 본 규정은 1953년 2월 27일의 독일의 대외 채무에 관한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각 체약국은 특히 그 영토내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지식의 상호 교환과 이용 그리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타

방 체약국과 협력한다.

### 제11조

- (1) 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가능한 한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 (2) 이와같이 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서 그 분쟁은 중재재판에 제출되어야 한다.
- (3) 여사한 중재재판은 매 개별적 사건마다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즉, 각 체약국이 1명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2명이 그들의 중재재판장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될 제3국의 국민 1명에 대하여 합의한다. 여사한 중재 재판관은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게 그 체약국이 그 분쟁을 중재 재판에 제출하기를 원한다고 통고한 후 2개월 이내에, 또한 그 재판장은 3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 (4) 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도 별도의 관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역시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서열 순위상 차위에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 (5) 중재 재판은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판결을 행한다. 그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다. 양 체약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 절차에 있어 그 변호인의 비용을 부담하며, 재판장과 잔여 비용은 양 체약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재 재판은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이 별도의 중재재판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 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중재 재판 자신이 결정한다.

### 제12조

본 조약의 제 규정은 체약국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단 국제법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종류의 조치는 외교관계가 다시 수립되건, 안되건의 여부에 관계없이 충돌이 사실상 종결된 후, 부당한 지체없이 늦어도 그 종결 후 1년 이내에 철회되어야 한다.

### 제13조

本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政府가 本條約의 效力發生時부터 3個月以內에 大韓民國政府에 對하여 反對宣言을 하지 않는 限 “베르린“州에도 適用된다.

### 제14조

- <1> 本條約은 批准되어야 하며, 批准書는 가능한 限 早速히 “본“에서 交換되어야 한다.

<2> 本 條約은 批准書交換日로부터 1個月後에 效力이 發生한다. 本 條約은 10年間 效力을 가지며 그 후는 本 條約이 終結되기 1年前에 어느 一方締約國이 文書로서 效力이 締結을 通告하지 아니하는 限 無期限效力을 가진다. 10年間の 效力期間滿了後에는, 一方締約國이 1年前의 通告를 함으로써 本 條約은 언제든지 終結할 수 있다.

<3> 本 條約이 終結되기 前에는 行한 投資에 關하여는, 第1條 乃至 第13條의 諸規定은 本 協定の 終結日로부터 다시 15年間の 期間동안 效力을 갖는다.

1964年 2月 4日 서울에서 韓國語 2通, 獨逸語 2通, 그리고 英語 2通으로 6通을 作成하였으며, 各原本은 同等히 正本이다. 本 條約의 어떤 原本間에 異見이 있을 境遇에는 英語原本이 優先한다.

大韓民國을 爲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을 爲하여

#### 議定書

大韓民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締結된 投資의 增進 및 相互保護에 關한 條約을 調印함에 있어 아래에 署名한 全權委員은 다시 同 條約의 不可分의 一部로 看做되는 다음 條項에 合意하였다.

<1> 締約國은 本 協定이 調印된 後로부터 一年以內에 特히 다음 事項을 規定하는 居住 및 商業活動에 關한 條約의 締結을 爲한 交渉을 始作한다. 出國 및 入國, 一時 또는 恒久的인 居住, 追放으로부터의 保護, 企業 및 職業活動의 選擇과 運營, 資本에 關하여 制限없는 企業의 設立 및 參加, 經營者 및 技術者의 勤勞許可, 身體와 財産의 保護와 完全, 法院의 自由로운 利用, 契約의 自由, 不動産과 其他 財産의 取得, 仲裁者로서의 承認

<2> 第1條 附則

가. 第1項 附則

一方締約國의 法規에 依據하여 그 領土內에서 他方締約國의 國民 또는 會社에 依하여 行하여진 投資는 本 條約의 完全한 保護를 享有한다. 投資를 行하기 爲하여 導入 許可 節次가 必要한 限度까지 그와 같은 投資는 導入許可가 賦與되는 日字부터 이 保護를 享有한다. 어느 一方締約國도 이 導入許可에 對하여 自由로히 決定할 수 있다.

나. 第2項 附則

第1條 第2項은 本 條約의 效力發生以前에 賦與된 것 보다 더 有利한 待遇에 對하여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但, 締約國은 第1條第2項의 規定에 依據하여 本 條約의 效力發生以後에 賦與된 待遇에 對하여 그들 各國의 法規를 適用한다.

<3> 第2條 附則

가. 다음에 列舉한 것은 特히 第2條에 規定된 不利한 待遇로 看做된다. 原料 또는 補助物資의 購買, 動力 또는 燃料의 購買 또는 如何한 種類의 生産이나 運營手段의 購買를 制限하는 것 國內 또는 國外에서 生産品의 市場購買를 阻害하는

것과 또한 이와 類似한 效力을 갖는 措置. 但, 公共의 安全한 秩序, 公衆衛生 또는 公衆道德을 爲하여 取하여진 措置는 第2條의 意味內에서 보다 不利한 待遇로 看做되지 아니한다.

- 나. 自國의 國家經濟의 利益을 爲하여 어느 一方締約國도 他方締約國의 國民 또는 會社의 投資를 許容함에 있어 第2條에 規定된 待遇와 相異한 特定條項을 들 수 있다. 如斯한 性質의 特定條項이 作成된 境遇에는 第2條의 規定은 그 範圍內에서 適用되지 아니한다. 效力이 發生할 如斯한 特定條項은 導入許可書에 詳細하게 規定되어야 한다.
- 다. 第2條는 雇傭人의 入國, 滯留 그리고 活動에 適用되지 아니한다.

<4> 第3條第2項 附則

國家權力의 行爲로서 投資를 形成하거나 또는 投資의 一部를 形成하는 資産이나 權利의 如何한 種類의 剝奪도 收用으로 看做되며 또한 收用과 對等한 其他 國家 權力의 行爲와 國有化措置 亦是 收用으로 看做된다.

<5> 第4條 附則

가. 第4條와 달리, 어느 一方締約國도 導入許可書에서 또는 萬若 如斯한 許可書가 必要하지 않는 境遇에는 資産의 投資되기 以前에 作成된 書面 諒解書에서 移轉에 對한 制限에 他方締約國을 服從하게 할 權利를 留保할 수 있다. 어느 一方締約國도 그 支拂 差引 殘高에 依하여 特殊한 境遇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最小限의 移轉이 保障되어야 한다.

- ㄱ) 投資의 目的을 爲한 것이나 아직 投資되지 아니하고 他方締約國의 領土에 送金된 資本의 移轉 全部
- ㄴ) 移轉日字 現在로 投資價値의 年間 20퍼센트 限度內에서 收益의 移轉
- ㄷ) 清算의 境遇에 있어, 每年 清算果實의 20퍼센트 移轉, 投資를 爲하여 許可가 必要한 境遇에 本 條項은 그와 같은 許可日字以後 2년까지 適用되지 않는다. 上記 ㄴ) 및 ㄷ)에 規定된 金額이 1年以內에 移轉되지 않는 限度內에 있어서 그 後에 移轉되지 않는 金額의 追加移轉을 締約國이 保障하여야 한다.

나. 第4條의 意味內에서 “清算“이라 함은 關係投資를 全部 또는 一部 拋棄할 目的으로 行하여진 處分을 包含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6> 第5條第1項 附則

第5條의 代位辨濟는 法律 또는 合法的인 處分에 依하여 行하여진 代位辨濟를 意味한다.

<7> 第6條第1項 附則

移轉節次의 完了를 爲하여 正常的으로 必要한 期間에 移轉이 行하여진 境遇에는 第6條第1項의 意味內에서 移轉이 “不當한 遲滯없이“ 行하여진 것으로 看做한다. 如斯한 期間은 關係申請이 提出된 日字부터 始作되며 결코 2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8> 第8條第1項 附則

어느 一方締約國도 個個의 境遇에 있어서 導入許可書에 그 領土內에서 投資될 資本의 金額을 規定하여야 하며, 또 如斯한 資本이 投資되는 方式을 決定할 수 있다. 어느 一方締約國도 그와 같이 投資된 資産이 方式에 있어 一致하는지 또 許可書에 規定된 價値에 一致하고 있는 與否를 審査할 수 있다. 審査의 結果에 關하여 顯著한 差異가 發生할 境遇에는 締約國은 一團의 專門家를 任命하여 그 審査를 再審査할 수 있다.

<9> 第11條 附則

第11條는 兩締約國이 個個의 境遇에 있어 第11條에 規定된 節次代身 本 條約의 解

釋의 適用에 關한 紛爭을 決定하기 爲하여 國際司法裁判所에 依賴할 수 있다.

- <10> 어느 一方締約國도 自由競爭의 原則에 反하여 本 條約의 意味內에서 投資를 代表하는 財産의 轉送에 參與하는 他方締約國의 輸送業者를 阻止 또는 妨害하기 爲한 差別的인 措置를 삼가하여야 한다. 이는 또 本 條約의 意味內에서 關係締約國의 領土內에서 投資된 資本에 依하여 어느 一方締約國 또는 第3國의 領土內에서 取得된 財貨에 對하여도 亦是 適用된다.
- <11> 어떤 다른 國籍 決定方法을 妨害함이 없이 關係締約國의 關係當局이 發行하는 旅券을 所持하는 者는 特히 그 締約國의 國民으로 看做한다.

1964年 2月 4日 서울에서 韓國語 2通, 獨逸語 2通, 그리고 英語 2通으로 6通을 作成하였으며, 各 原本은 同等히 正本이다. 本 議定書의 어떠한 原本間에 異見이 있을 境遇에는 英語 原本이 優先한다.

大韓民國을 爲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을 爲하여

### 각 서 교환

대한민국 내에서 독일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와 그 발전을 촉진하고 증진 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교섭에서 규정된 바 있는 확정 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그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질서 또는 안전, 또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의 이유로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독일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 체재하여 그곳에서 고용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독일 국민에게 필요한 인가를 허여한다.

본인은 아래와 같은 귀측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독일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와 그 발전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교섭에서 규정된바 있는 확정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그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질서 또는 안전, 또는 공공위생 또는 도덕의 이유가 달리 보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독일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 체재하여 그곳에서 고용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독일국민에게 필요한 인가를 허여한다“